

#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

2008. 7. 11.  
예산결산특별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8년 6월 12일 마포구청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08년 7월 3일

다. 상정일자 : 제137회 제1차정례회 제1차위원회(2008. 7. 4)

제137회 제1차정례회 제3차위원회(2008. 7. 8)

상정, 심사, 의결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

▣ 제안설명자 : 기획재정국장 김 재 형

가. 제안이유

○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제출

나. 제출내역

○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

■.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현황

(당초)

(단위 : 천원)

기금명	수 입 계 획								지 출 계 획						
	계	출연금	정교부금	용자금수	이 자 입	예수금입	예치금회수	기 타	계	고유목적사업비	예수금원상	용자금	예탁금	예치금	기 타
총계	64,690,723	7,642,935	55,000	2,515,750	2,490,725	1,043,272	48,440,672	2,502,369	64,690,723	32,430,667	1,265,594	3,832,000	1,043,272	3,020,550	23,098,640
융합권리 기 금	24,362,974				924,322	1,043,272	22,395,380		24,362,974		1,265,594				23,097,380
다문화(차별)차별 차별(차별)차별(차별)	3,501,260	423,662			815,904		1,877,604	384,090	3,501,260	3,500,000					1,260

(변경)

(단위 : 천원)

기금명	수 입 계 획								지 출 계 획						
	계	출연금	정교부금	용자금수	이 자 입	예수금입	예치금회수	기 타	계	고유목적사업비	예수금원상	용자금	예탁금	예치금	기 타
총계	<b>68,735,323</b>	<b>9,642,935</b>	55,000	2,515,750	<b>2,535,325</b>	1,043,272	48,440,672	<b>4,502,369</b>	<b>68,735,323</b>	<b>34,430,667</b>	<b>3,265,594</b>	3,832,000	1,043,272	<b>5,065,150</b>	<b>21,098,640</b>
융합권리 기 금	24,362,974				924,322	1,043,272	22,395,380		24,362,974		<b>3,265,594</b>				<b>21,097,380</b>
다문화(차별)차별 차별(차별)차별(차별)	<b>5,501,260</b>	423,662			815,904		1,877,604	<b>2,384,090</b>	<b>5,501,260</b>	<b>5,500,000</b>					1,260
정학기금	<b>2,044,600</b>	<b>2,000,000</b>			<b>44,600</b>				<b>2,044,600</b>					<b>2,044,600</b>	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(전문위원 신 승 관)

○ 동 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특정한 목적을 위해 특정자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어 기 설치된 14개의 기금에 대하여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2007년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을 얻었으나 2008. 5. 8. 조례 제707호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가 제정되어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기금이 설치됨에 따라 기금 조성을 위하여 마포 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에서 통합관리기금에 예약하였던 20억원을 회수하여 장학기금으로 출연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8. 기타사항 : 없음